

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법인용MMF제4-26호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- 종류 C-F, C-P2, C-P2e형 클래스 추가
일괄신고서	- 종류 C-F, C-P2, C-P2e형 클래스 추가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4년 7월 12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클래스 추가	①~② <생략>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종류 C 수익증권 : 가입제한은 없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 2. 종류 C-1 수익증권 :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3. <신설> 4. <신설> 5. <신설>	①~② <좌동>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종류 C 수익증권 : 가입제한은 없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 2. 종류 C-1 수익증권 :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3. <u>종류 C-F 수익증권 :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</u> 4. <u>종류 C-P2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 5. <u>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클래스 추가	① <생략> 1.~2. <생략> 3. <신설> 4. <신설> 5. <신설>	① <생략> 1.~2. <생략> 3. <u>종류 C-F 수익증권</u> 4. <u>종류 C-P2 수익증권</u> 5. <u>종류 C-P2e 수익증권</u>
제39조(보수)	클래스 추가	①~② <생략>	①~② <좌동>

		<p>③ <생략> 1.~2. <생략> 3. <신설></p> <p>4. <신설></p> <p>5. <신설></p>	<p>③ <좌동> 1.~2. <좌동> 3. <u>종류 C-F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5</u> 4. <u>종류 C-P2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0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5</u> 5. <u>종류 C-P2e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5</u></p>
--	--	--	---

◆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</u> 되지 않습니다.
간이투자설명서 [요약정보]-운용전문인력	최근 일자 업데이트	<생략>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간이투자설명서 [요약정보]-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클래스 추가	[표] 기타 <u>펀드등(F) <신설></u> <u>퇴직연금(P2) <신설></u>	[표] 기타 <u>펀드등(F):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입니다.</u> <u>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입니다.</u>
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신설>	<u>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등) ED543</u> <u>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 ED544</u> <u>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 ED545</u>
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신설>	<u>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등) ED543</u> <u>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</u>

			ED544 <u>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</u> ED545
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최근 일자 업데이트	<생략>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[표] <u>C-F <신설></u> <u>C-P2 <신설></u> <u>C-P2e <신설></u>	[표] <u>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등)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</u> <u>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 <u>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
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클래스 추가	(2) 가입자격 [표] <u>C-F <신설></u> <u>C-P2 <신설></u> <u>C-P2e <신설></u>	(2) 가입자격 [표] <u>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등)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</u> <u>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 <u>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
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클래스 추가	<u>*별첨 1(정정 전)</u>	<u>*별첨 1(정정 후)</u>

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업데이트	회사 연혁 <u><추가></u>	회사 연혁 <u>2023.12. 종합자산운용사 인가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● 별첨 1

- 정정 전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명칭 (클래스)	가입자격	수수료율			
		선취 판매수수료	후취 판매수수료	환매 수수료	전환 수수료
C(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)	가입제한은 없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	없음	없음	없음	없음
C-I(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	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			
부과기준		가입시	환매시	환매시	전환시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지급시기
	C형(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)	C-I(수수료 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	
집합투자업자 보수	0.050	0.050	매 3개월
판매회사 보수	0.085	0.030	
수탁회사 보수	0.010	0.010	
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	0.005	0.005	
총 보수	0.150	0.095	-
기타비용	0.002	-	사유 발생 시
총 보수.비용	0.152	0.095	-
(동종유형 총 보수)	0.150	-	-
합성 총 보수.비용	0.157	0.095	-

(따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			
증권거래비용	0.016	-	사유 발생 시

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

클래스종류	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단위 : 천원)				
	1년	2년	3년	5년	10년
C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)	16	32	49	87	197
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	10	19	30	52	119

- 정정 후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명칭 (클래스)	가입자격	수수료율			
		선취 판매수수료	후취 판매수수료	환매 수수료	전환 수수료
C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)	가입제한은 없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				
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기관)	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			
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펀드등)	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 별계정 전용 수익증권				
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 인-퇴직연금)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 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 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	없음	없음	없음	없음
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 -퇴직연금)	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				

부과기준	가입시	환매시	환매시	전환시
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	지급시기
	C형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)	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	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등)	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	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	
집합투자업자 보수	0.050	0.050	0.050	0.050	0.050	매 3개월
판매회사 보수	0.085	0.030	0.030	0.040	0.020	
수탁회사 보수	0.010	0.010	0.010	0.010	0.010	
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	0.005	0.005	0.005	0.005	0.005	
총 보수	0.150	0.095	0.095	0.105	0.085	
기타비용	0.002	-	-	-	-	사유 발생 시
총 보수·비용	0.152	0.095	0.095	0.105	0.085	-
(동종유형 총 보수)	0.150	-	-	-	-	-
합성 총 보수·비용 <small>(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</small>	0.157	0.095	0.095	0.105	0.085	-
증권거래비용	0.016	-	-	-	-	사유 발생 시

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

클래스종류	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단위 : 천원)				
	1년	2년	3년	5년	10년
C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)	16	32	49	87	197
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	10	19	30	52	119
C-F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등)	10	19	30	52	119
C-P2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	11	22	33	58	132
C-P2e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	9	17	27	47	107